

의안번호	2209866
의 회 인	김동아 의원
회 답 일	2025. 7. 1.
추계번호	25A23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제6호 신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기금의 사용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9조제6호 신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기금의 사용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 사업은 개정안에 따라 일반회계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실시될 것이므로,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실시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수, 대상자별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형태 및 내용 등 세부 사항을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자료 1]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개정안에 따른 사업이 고용보험사업에 준하여 실시될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소상공인 사업주 본인 또는 그 사업장의 종사자 중 ②임신부이거나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③출산 및 양육을 위한 휴업·휴직 의사가 있는 사람의 수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관련 통계의 부재로 이를 추계할 수 없음
 - 아울러 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급여액도 가정하여야 하나, 이는 지원 요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단가를 상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사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하거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휴직 대상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에 따라 추계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재정 지원의 요건과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지원 단가를 설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5월까지 약 6년 동안 1인 자영업자¹⁾ 3만 6,231명에 대하여 누적 537억 4,100만원이 지원되었음(연평균 89억 5,700만원)

* [참고자료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는 ①자녀를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지원, ②소상공인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③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휴업 손실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자녀를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3분의 2 지원 (1자녀 6개월 최대 360만원, 2자녀 6개월 최대 540만원),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휴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일 5만원, 최대 10일의 휴업 손실 비용 지원

* 추가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육아휴직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

* 해당 사업은 KB금융지주 등 민간협력(기부)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

-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해당 사업을 실시한 202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732명을 대상으로 총 15억 5,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경우 452명을 대상으로 5억 5,700만원, 휴업 손실 비용 지원의 경우 38명을 대상으로 1,300만원이 지급되었음

*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사업 현황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는 1인 자영업자 외에도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기타 사업자등록증 없이 소득활동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되나, 이들은 소상공인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인 자영업자 지원 실적만을 서술

* 자영업자 또한 고용형태나 경제활동 방식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으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요건(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일 것)을 충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소상공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자료로 제시함

-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구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임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남·녀 근로자 모두 포함) 연간 6일(<u>최초 2일 유급</u> , 4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 * <u>1일 약 8만원</u>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
출산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u>최초 60일 유급</u>) *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한 날부터 10~90일의 휴가를 부여(<u>최초 60일 유급</u>)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60일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출산휴가 부여(유급, 최대 약 16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
육아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아래의 구분에 따라 <u>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u>) -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u>하한 70만원, 상한 250만원</u>) - 4~6개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u>하한 70만원, 상한 200만원</u>) - 7개월~종료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u>하한 70만원, 상한 160만원</u>) * 부모 각각 1년(최대 1년 6개월),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경우 <u>매주 최초 10시간분</u> 에 대하여 <u>최대 55만원</u> 의 급여 지원 *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
가족 돌봄	가족돌봄휴가·휴직	·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허용(<u>무급</u>)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또는 학업을 사유로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0시간)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u>위라벨 일자리 장려금</u>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현황

제도 개요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 포함)
- 지원내용
 -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될 것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구분	유형	세부 요건
근로자	1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¹⁾ 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²⁾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4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이하 5유형 동일)
	5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³⁾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주: 1) 적용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2)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킥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자료: 정부24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9(7월~)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37,500	21,608	24,899	12,776	15,572	17,676	21,789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유형별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①유형 (180일 미충족)	②유형 (고보 제외자)	③유형 (고보 미가입)	④, ⑤유형 (1인 사업자)	⑥유형 (특고 프리랜서)
2019(7월~)	83	60	10	2,062	2,138
2020	193	196	59	5,750	6,146
2021	197	162	52	5,584	5,570
2022	185	160	39	5,527	4,540
2023	155	119	34	5,837	4,347
2024	207	148	38	6,915	5,314
2025(~5월)	135	99	25	4,556	4,197
합계	1,155	944	257	36,231	32,252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유형별 지급액

(단위: 백만원)

구분	①유형 (180일 미충족)	②유형 (고보 제외자)	③유형 (고보 미가입)	④, ⑤유형 (1인 사업자)	⑥유형 (특고 프리랜서)
2019(7월~)	115	88	13	2,950	3,039
2020	286	296	92	8,534	9,092
2021	289	238	80	8,238	8,202
2022	233	216	52	7,372	6,030
2023	261	219	54	10,006	7,522
2024	287	222	60	9,985	7,770
2025(~5월)	195	144	36	6,656	6,166
합계	1,666	1,423	387	53,741	47,821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누적 수급자	연도별 예산액	누적 지급액
1인 자영업자 출산양육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 목적: 출산·육아 지원제도 영역 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산부 모성보호 및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연혁: '25.1. 시행 -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지원기준(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④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25) 1,270	('25) 1,864	('25) 1,18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목적: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배우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을 도모 - 연혁: '25.1. 시행 -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지원기준(요건):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80만원	('25) 462	('25) 1,674	('25) 370

사업명		사업개요	누적 수급자	연도별 예산액	누적 지급액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목적: 임신·출산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양육부담 경감 - 연혁: '24.9. 시행 - 대상: 서울시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 지원기준(요건):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 중 만 3개월~만 12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2/3지원 ※ 1자녀 6개월 최대 360만원 (2자녀 540만원)	('24) 117 ('25) 335	비예산 ¹⁾ (총) 3,550	('24) 81 ('25) 476
	휴업 손실 지원	- 목적: 임신·출산, 산후조리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 연혁: '25.2. 시행 - 대상: 임신·출산, 산후기 휴업한 소상공인 - 지원기준(요건): 영업지가 서울시, 6개월 이상 영업, 병원·산후조리원 이용 등 - 지원금액: 1일 5만원, 최대 10일	('25) 38	비예산 ¹⁾ ('25) 1,000	('25) 13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목적: 소상공인 근로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 검토 중	—	비예산 ¹⁾ ('25) 400	—

주: 1)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는 KB금융지주 등 민간협력에 따른 기부금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비예산 사업임

1. 누적 수급자 및 누적 지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